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방 송 통 신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
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·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 업무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 및 암호화한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·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업무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운영지원과·감사담당관”을 “운영지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조정관 1명”을 “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3 및 제5조의2로 한다.

제7조제6항에 제2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

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·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

10의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
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 및 연계

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·관리 실태 점검

별표 1의2 중 총계 “238”을 “23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30”을 “23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21”을 “22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하부조직) ① 사무처에 <u>윤영지원과 · 감사담당관 · 방송정책국 ·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</u>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.	제4조(하부조직) ① ----- <u>윤영지원과</u> ----- ----- -----.
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, 사무처장 밑에 <u>기획조정관</u> 1명을 둔다.	② ----- ----- <u>기획조정관</u> 및 <u>감사담당관</u> 각 1명-----.
<u>제5조의2</u> (생 략)	<u>제5조의3</u> (현행 제5조의2와 같음)
<u>제5조의3</u> (생 략)	<u>제5조의2</u> (현행 제5조의3과 같음)
제7조(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) ① ~ ⑤ (생 략)	제7조(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의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 · 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</u>
3. ~ 10.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의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 · 기술적 · 관리적</u>

11. ~ 29. (생략) ⑦ ~ ⑫ (생략)	<u>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</u> <u>안전조치에 대한 운영·관리</u> <u>실태 점검</u> 11. ~ 29. (현행과 같음) ⑦ ~ ⑫ (현행과 같음)
---	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의2]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38</u>	<u>239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30</u>	<u>231</u>	+1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21</u>	<u>222</u>	+1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6